

동 지침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0.2.3 既 시행)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6판)」(‘20.2.20 시행)을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Ⅱ 판

2020. 2. 24.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목 차

I. 목적 및 기본방향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어린이집용) ·	2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2
3.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5
4. 어린이집내 감염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5
5. 어린이집내 감염예방을 위한 그간 조치사항	6
▷ 불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8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9
3.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11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13
5.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4
6.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요약)	15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절차 지침상, 신고 대상 등의 기준 변경 시, 관련내용 반영예정

1. 목 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찰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어린이집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원아동, 교직원 및 기타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
-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1)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범위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아동 및 보육교직원은(동거가족 포함)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등원 중단
 -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어린이집 내 중국에서 입국한 보육교사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업무 배제 (유급 휴가 처리)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이 의심되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동거가족 포함)은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 *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2월 중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 중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소 및 1339 상담, 의료기관 내원, 진단검사 의뢰

□ 특정지역 방문 또는 접촉이 없어도 보육교직원 스스로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을 느끼는 경우 원장이 판단하여 한시적 업무배제, 해당 교직원은 보건소 및 1339 상담, 의료기관 내원, 진단검사 의뢰

※ 위 사항으로 업무배제된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외에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코로나 예방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유급휴가 부여

□ 재원 아동 대상 체온 측정 및 관찰 결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씌우고 보호자 등에게 통보, 일시 등원 자제 및 의료기관 내원 등 권고

2) 위생관리

□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의무화(책임자 지정)

□ 보육교직원, 재원 아동 및 보호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게시판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병원체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매일 소독하되, 어린이집 자체 소독 시행 시 아래 원칙 준수

물품 및 장비*	소독 시기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	업무 종료 후
현관 보육실·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수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 시행 시 원칙>

1. 취약지역(화장실, 조리실, 하수구 등)을 집중관리 한다.
2.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교재교구, 장난감 등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이 공통적으로 많이 접촉하는 부분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매일 닦는다.
3. 창문 및 출입문의 자연 개방을 통한 환기
4.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한다.
 -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사용할 것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소독제 희석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할 것
 - 사용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제를 뿌린 후 최소 10분 이후에 깨끗한 물걸레나 마른 걸레로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아낼 것
 - 소독제에 사람의 피부나 눈이 과다 노출시 즉시 흐르는 물에 5분 동안 씻어 낼 것
 - 소독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 하는 조치를 취할 것

※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3.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어린이집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통보)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1인 1실)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4.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하되,
 - 불가피한 경우(전자출결시스템 설치,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 등)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출입하도록 함
 - i) 최근 중국 지역 및 신천지대구교회 방문 여부 및 접촉자 여부,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의무화(책임자 지정)
 - ii) 손 씻기 또는 손세정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 iii) 가급적 아동이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 신학기 입소 후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등도 자제하되, 입소 아동의 상황으로 불가피한 경우 위 조치 사항을 준수한 후 출입

□ 행사 또는 교육

-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교육 진행 시 최근 중국 입국자 및 신천지대구교회 방문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및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어린이집 교직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
 - 행사장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예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관련은 별도 안내할 계획
 - * 누리과정 연수의 경우 집합연수는 자제하고, 우선 원격연수를 통한 학습을 권장하며, 처우개선편지 지급 예외적용 기간(~20.6.)은 연장할 예정으로, 기간은 별도 안내

□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 (일시폐쇄)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 (휴원)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휴원 어린이집 원장은 등원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급간식도 제공
 - ※ 당번교사 외 종사자 출근 관련 사항은 관리자인 원장의 재량사항임
 -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및 보호자 대상으로 돌봄현황 및 아동상황 등 모니터링 전화 필수(매일 1회)
 - ※ 모니터링 결과 정리양식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하였음('20.2.23)

< 어린이집 신학기 운영 관련 안내 >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이며, 이는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3월 신학기 입소처리 등 운영은 일정대로 진행

5.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그간 조치사항

구분		내 용	담당 부서
대 응 요 령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배포(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대 응지침 배포(중수본)에 따른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배포 * 어린이집 대응요령 추가 안내(2.6.)	보육 기반과
	※ 추가 대응사항 안내(2.2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응지침 중 보육교직원 한시적 업무배제 관련 사항 추가안내	
	어린이집 일시 폐쇄·휴원 기준 안내(2.3.)	재원아동 및 종사자 등이 신종코로나감염증 확진판정을 받거나 접촉 자인 경우 등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안내 * 단, 휴원 어린이집은 반드시 긴급보육계획 수립 및 실시	보육 기반과
	※ 변경 안내(2.12.)	감염병 관리 체계상 일관성 확보, 보육 공백 방지 등을 위한 기준 변경	
	※ 보육공백 방지 조치 안내(2.19.)	지역내 어린이집 일시폐쇄 또는 집단 휴원에 따른 보육공백 방지 위한 긴급 보육 운영 등 조치 안내	
	※ 휴원 어린이집 조치 필요사항안내(2.23)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어린이집 돌봄현황 파악 등 조치 필요사항 안내	
	어린이집 소독 기준 안내(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소독 지침(평 시소독/감염병발생(유행시)소독 구분) 안내	보육 기반과
어 린 이 집 지 원	어린이집 신학기 운영 안내(2.23)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집 연중 운영방침 안내	보육 기반과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1.28.)	출석 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	보육사업 기획과
	※ 기준 재안내(2.19.)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보호자 적극 전파 독려	
	교직원 수당 지급 기준 완화(1.28.)	교직원 수당 지급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에 따 른 휴무일을 근무일로 포함	보육사업 기획과
	대체교사 지원 기준 특례(1.29.)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 의 경우 최대 14일간 대체 교사 지원	공공 보육팀
인 건 비 지 원	인건비 현원 기준 완화 및 유급휴가 처리 (2.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 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현원기준 적용 유예 및 어린 이집 일시 폐쇄·휴원 시 유급휴가 처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격리된 보육교직원, 휴·폐원 조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 처리	보육사업 기획과, 공공 보육팀

구 분		내 용	담당 부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인비 운영비 지원기준완화(23)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 (벌점기준완화) 중국 방문 등으로 시간제보육 이용예약 취소 시 무벌점(1.28.)	보육사업 기획과
	누리과정 처우 개선비·운영비 지급유예 기간 연장(예정)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자제 방침’에 따라 지급유예 기간 (~‘20.6월) 연장 예정 * 유예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2.3.)에 포함	보육 기반과, 보육사업 기획과
평 가	어린이집 현장 평가 연기 및 평가유효기간 연장 (1.31.)	2월 현장평가 중단으로 평가 유효기간 1~2개월 연장 * 단,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에 의결로 원장이 평가기관(한국보육진흥원)으로 현장평가 요청 시 중단없이 평가 진행	보육 기반과
교 육	영유아 부모교육 대응 안내(23)	부모교육 운영 관련 대응사항 안내(집합교육 자제 및 연기 등)	보육사업 기획과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부여 (2.4)	‘20.3.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는 유 예기간(~‘20.8월) 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교육 신청 후 어 린이집에 우선 근무할 수 있음 * 단, 임용 전 사전 적응을 위한 원장 책임하 교육 실시	공공 보육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행동수칙**

☒ **일반국민 행동수칙**

- ①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③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④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⑤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⑥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

- 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②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
- ③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 ④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 ⑤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⑥ 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에 방문한 경우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국민 여러분!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용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선별진료소 갈 땐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타인과의 접촉 삼가**



의료진 여러분!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호흡기 질환자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ITS 활용 등)



**진찰 시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보건소로 신고**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소독제 설명서에 따른 사항 준수)

-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청소/소독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
 - *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소독 방법 금지
-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
 -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
-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
-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
-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 를 소독하고, 천(타올)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소독 장비는 폐기
 - *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월)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신고 대상 >

1.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4.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5.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6.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자표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자자체용, 제6판)